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 12. 31.자로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2024. 1. 1.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순환경제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순환이용’ 활동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셋째,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넷째,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신설)

다섯째,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 폐기물 발생 이후 지표뿐만 아니라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서울시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신설)

여섯째,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신설)

일곱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신설)

여덟째, 순환경제사회 발전 시설 설치·운영, 연구·개발, 산업육성, 순환자원 사용 사업 등에 자금 융자 및 융자 자금으로 재활용 육성자금 등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 신설)

아무쪼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